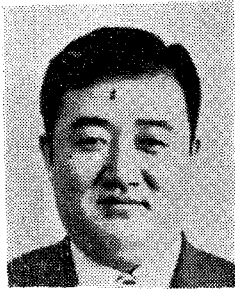


# 現代企業에 있어 工業所有權公報의 役割



李 道 善

<前 特許廳 調査局長>

## ① 韓國經濟와 特許問題

最近 特許制度가 技術開發을 促進하는 原動力이 되고, 輸出市場의 確保手段과 企業經營上 武器的 役割을 한다는 認識이 점차로 높아짐과 아울러 그 具體的인 實踐과 措置가 擴散, 普及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現象이다.

우리나라는 天然資源이 富豊하지 못한데다가 國土가 넓지 않고, 人口密度가 稠密한 與件위에 있다. 그런가하면 昨今의 世界各國은 70年代初 石油波動으로 인한 資源民族主義傾向 以後 實利追求를 위한 保護貿易政策을 強化하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속에서 우리經濟가 國際舞台에서 自立하고 持續적으로 成長, 發展하려면 商品의 品質을 高級化하고, 重化學製品의 輸出을 伸張하여 高度産業國家가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는 技術의 開發과 革新이 先行되어야 하며 이의 母體의 役割을 하는 特許制度의 發展이 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 自由競爭市場에서 繼續企業으로서의 運營을 함에 있어서는 企業의 出發로부터 産業計劃의 着手, 商品의 製造方法 및 販賣에 이르기 까지 기술개발과 더불어 特許問題와 結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從來 特許하면 神奇하다는 固定觀念으로서 一部の 特殊한 研究發明家만 利用할 수 있는 制度

로만 생각하여 敬遠視되어 왔다.

그러나 過去 우리의 經濟規模가 크지 못하고, 輕工業製品이 輸出의 主宗이었을 때에는 別問題가 없었으나 이제 수출이 100億弗台가 突破된 狀況에서는 問題가 다르다.

世界的인 纖維化學製造會社인 美國의 듀폰이 一流企業으로 脚光을 받게 된 것은 社內에 11年間 專擔研究室을 設置하고 무려 600萬弗의 開發研究費를 投資한 結果 마침내 1939年 나일론製品을 開發·特許化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나일론은 國際市場을 制霸하였음은 물론 世界各國으로부터 巨額의 特許權使用料를 받음으로써 2重의 收益을 올렸던 것이다.

또 日本의 日立會社는 2萬餘件의 特許權을 保有하고 있으면서 年間 約 2,400萬弗의 特許權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先進國 企業들은 世界到處에 특허권을 거미줄 같이 퍼놓고 自己들의 權利를 保護하고 있는데, 外國의 기술이나 상품을 단순히 模倣해서 수출하다가 該當國에 登錄된 商標나 특허권에 抵觸되어 수출이 沮止되든가 또는 損害賠償을 免할 길이 없는 實情이다.

일본의 어느 會社는 코카콜라瓶을 모방제조하였다가 코카콜라병에 관한 特許權者의 抗議로 70萬個를 廢棄한 일이 있는가 하면 美國의 상품을 모방하여 香港에 衣類를 수출한 某會社는 商標權者인 美國會社側에서 外交經路를 통해 權利

侵害의 不當性を 主張해음으로써 그에 附着하였던 상표에 의한 수출이 저지된 사실은 한 實例라 하겠으며 우리나라 商品中에도 輸出相對國에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써 海外獨古市場을 確保하지 못한 實例가 있다.

즉 高麗人蔘하면 우리 나라 固有의 輸出商品인데 東南亞市場에는 高麗人蔘이란 이름의 상표가 부착된 香港, 泰國, 自由中國, 日本産人蔘이 고려인삼이란 看板을 달고 판매되고 있어 우리나라産 高麗人蔘이 이같은 상표의 物件들로부터 眞價를 保障받지 못하고 競爭하고 있는 處地에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을 보건대 60年代 後半과 70年代 初에는 TV, 鐵鋼製品 등을 除外하고는 이제까지 主로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을 生産하였으나 현재는 自動車, 船舶, 通信機 등 高度의 技術製品을 수출하기에 이르렀으며 電子計算機, 大型發電機, 大型플랜트 등을 生産할 展望인데 이것은 高度技術의 뒷받침 없이는 生産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고도의 技術제품을 生産 또는 수출하려면 이에 관한 先進國家의 技術狀況 즉 特許情報의 入手活用이 必須要件이다.

## ② 工業所有權公報의 內容과 用途

工業所有權制度는 特許制度라고도 하며 이 제도는 새로운 考案 發明으로 創作된 技術을 公開하는 代償으로 考案·發明者에게는 獨占利潤을 保障하여 주기위한 權利를 부여하고 이를 保護하여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技術의 進歩 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産業發展에 寄與케 하려는 것인바 여기서 이 創造된 技術을 利用할 수 있도록 一般公衆에게 最新의 技術을 公開, 公表하는 冊子가 工業所有權公報인 것이다.

公업소유권公報에는 特許公報를 비롯하여 實用新案公報, 意匠公報, 商標公報등이 있다.

그 收錄內容을 보면 특허公報에는 自然法則을 이용한 고도의 創作에 대하여, 실용신안公報에는 특허보다는 小發明의 창작이지만 物品의 形狀, 構造 또는 組合한 新規의 物品으로서 새로운 利用價値에 대하여 國內外 研究發明家, 科學

者, 技術者, 技能人, 企業者등이 關係專門分野에서 오랜 時間, 努力, 또는 費用을 들여서 발명·고안한 事項의 明細書가 記載되어 있다.

또한 意匠公報에는 물품의 外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고안한 자가 물품의 形狀 模樣이나 色彩 또는 이것들을 結合한 사항이 記錄되어 있다. 상표公報에는 商品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標識로 하기 위하여 記號, 文字, 圖形 또는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自己商品을 他業者 商品과 뚜렷하게 識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표에 관한 사항등이 기록되어 있다.

工業所有權公報의 成立과 그 趣旨를 보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申請에 대하여 特許廳의 審査에서 새로운 創作性이 認定될 때에는 公衆審査에 붙이기 위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公報에 掲載하여 出願公報를 하게되는 것이고, 이 출원公報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公報日로부터 2月 以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공보를 통한 公중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創作性이 確認되고 公正性이 確保되는 것이다.

同時에 이 공보를 통하여 內外國人이 研究考察한 發明技術의 內容이 널리 공개됨으로써 必要한 者가 최근기술을 利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産業技術發展의 促進劑의 效果를 내게 되는 것이다.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는 심사에서 登錄要件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면 이 공보를 통하여 公중심사에 回附하는 바 누구든지 商標登錄을 許與하는 것이 不當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公報日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意匠登錄出願에 있어서도 심사에서 登錄요건에 合當하다고 인정되면 意匠登錄을 한 후 이를 의장公報에 게재하게 되는 것이다.

公업소유권公報에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用途로 活用할 수 있다.

(1) 研究所, 學界 및 産業界의 研究開發資料로 活用할 수 있으므로 重複研究에 따른 2重投資를 예방할 수 있고 (2) 外國技術을 導入하고자 할 경우 最新技術의 選別을 可能케 하는 關係機關의 判斷資料가 될뿐만 아니라 (3) 輸出伸張과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貿易情報資料로 (4) 企業業種의 存立, 轉換 또는 新製品의 개발과 새로운 市場의 開拓 등 企業經營上 意思決定의 자

료로 提供될 수도 있으며 (5) 特許 등 各種出願時 參考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以上과 같은 公業소유권 公報의 내용과 趣旨 및 그 用途의 多樣性을 參照하여 技術革新 및 개발의 연구에 最大限 活用하고 公報에 게재된 技術內容이 이미 公知公用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所定期日內에 이의신청을 하는 公衆審査制度를 充分히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公業소유권公報는 企業經營에서 多角的으로 活用될 수 있는 必須資料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國家가 採擇하고 있는 특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1948年 特許局의 創設時부터 현재의 특허청에 이르기까지 特許公報 317號, 實用新案公報 358號, 商標公報 131號, 意匠公報 150號 등 公業소유권 公報를 發刊하여 產業界, 學界, 研究所 등에 配布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外國의 公業소유권公報도 우리의 公報와 交換하여 特許廳 資料室에 保管된 것을 開放하여 一般人에게 閱覽시키고 있다.

그러나 종래 우리의 경우는 최신기술의 總和라 할 수 있으며 새 기술발전의 趨勢를 一目瞭然하게 밝혀주는 이 公業소유권公報가 人力과 資金關係로 產業의 專門分野別로 分類가 안된채 半死藏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어떠한 情報資料일지라도 單純히 雜多한 集合에 不過하다면 그 利用價値는 低下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실정에서 1977年 3월 특허청의 昇格과 더불어 이 公業소유권公報의 效用價値를 높이기 위한 整備作業에 착수하여 公業소유권公

〈別表〉 工業所有權公報分類現況

國別	權利別	年度	分類卷數	備考
韓國	特許·實用	1948~1977	200	
日本	特許	1950~1976	8,030	
	實用	"	5,400	
	公開實用	1971~1976	6,145	
	公開特許	"	5,723	
	意匠	1950~1974	855	
	小計		26,153	
美國	特許明細書	1967~1976	13,359	
合		計	39,712	

報를 別表와 같이 完全히 分類整備하였다.

產業別·專門分野別 分類方法에 依據, 2萬4千餘種目으로 細分類하여 손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이 公報의 集大成版을 今年內에 발간하여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등 需要機關에 集中的으로 普及 우리나라 기술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는 特許業務 國際化的의 前提條件인 國際分類(IPC)에 관한 前段階作業인 동시에 기술개발을 先導할 수 있는 기술의 經典으로서 特許 내지 技術情報資料의 體系의인 出帆으로서의 意義를 갖는 것이다.

### ③ 企業에 있어서의 工業所有權公報

이제 우리經濟는 W.W. Rostow의 新經濟發展段階說이나 W. Hoffmann의 工業段階說을 구태여 授用하지 않더라도 先發 開發途上國의 位置에서 先進國團 水準을 向하여 進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다윈의 進化論보다 더욱 高次元의 競爭의 進化論이 妥當한 世上이 되었다. 오늘날 製造된 生産品의 99%이상이 기술혁신에 의한 開發競爭商品들이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既存製品의 개량과 새로 고안·발명한 제품에 관한 경쟁이 展開되는 곳이며 더구나 海外市場은 各 輸出業者의 利潤極大化를 위한 生存의 決判場이 되어 있다.

이리하여 經濟的 側面에서의 國境線도 더욱 더 冷酷하여져서 國際貿易을 통한 經濟戰이 政治戰, 軍事戰 못지 않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미 先進各國에서는 오래전부터 특허제도의 眞價를 똑바로 認識하고 公業소유권公報를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현재 우리는 적극적인 기술의 개발로 產業構造를 고도화하고 重化學工業化를 指向, 產品의 高級化를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企業들은 이 公業소유권公報를 蒐集하여 營業業種에 屬한 분야별로 分類備置하여 다른 기술정보資料와 함께 企業運營의 根幹資料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特許出願에 의한 權利取得 및 防衛, 特許訴訟, 特許權의 移轉契約, 製品開發, 生産, 마케팅 등 기업의 諸活動의 자료로 活用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新製品을 개발하거나 事業着手時 經營戰略으로 중요한 정보가 되는 關聯特許權의 有無, 先行技術調査, 권리의 내용 및 권리者등을 公업소유권공보에서 充分히 把握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事業着手後 他人의 특허권과의 저촉문제로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特許權實施契約이 필요하게 된다는지 이미 타인이 연구개발

한 것에 대한 2중투자로 浪費를 招來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기업도·現代인 중요한 문제로 새로히 登場하고 있는 특허제도를 再認識하여 公업소유권공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다. ※

—10면에서 계속—

## 2. 微生物特許審査의 專門化

微生物工業分野뿐만 아니라 他産業分野에 있어서 特許審査는 正確하고 公正해야 한다는 것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審査業務의 수행은 각분야에 걸친 廣範圍한 특허 및 개발연구에 대한 情報의 뒷받침과 專門的知識의 陶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생물공업분야에는 아직 이에 관련된 專門分野가 없으며, 미생물 및 발효관계특허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專門審査官이 없는 것이 問題이다.

이제까지는 미생물공업분야의 國內科學技術開發研究가 低調하기 때문에 發明特許의 件數도 적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生物化學工業의 적극적인 振興施策과 더불어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도 增加되어 나아갈 것이다. 이와더불어 증가될 발명특허출원건수에 대비해서 앞으로 미생물 및 발효관계의 특허심사를 專門化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國內發明特許의 保護

이제 우리는 80年代를 向한 두뇌산업의 발전과 科學技術의 高度化등 새로운 科學技術時代를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국내기술발전의 고도화와 技術輸出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發明品 또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장려하여 國內工業所有權의 확보뿐만 아니라 國際的 工業所有權의 取得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특허출원의 장려를 위해서는 비록 國內發明品이 外國의 것에 비해 質적으로 越等히 優秀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進歩性이 보인다면 특허권을 부여하고 보호하여 次期의 국제적 公업소유권의 基盤을 構築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보호하

고 개발연구를 장려하는 길이며 나아가서 先進工業技術의 土着化와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개발기술 또는 발명에 대한 출원 특허는 不足된 內容을 補充하고 개량하도록 善導하여 否定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肯定을 위한 심판의 姿勢로 임하여 국내특허출원을 장려, 특허권취득의 문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④ 結 言

앞으로 8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産業經濟가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발연구의 深化가 要求되고 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미생물공업기술이 공헌할 바 크며, 획기적인 技術革新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미생물공업기술의 핵심이 되는 것은 생산성이 우수한 미생물균주이다. 優秀菌株의 選別改良保存등의 기술개발이 重要하며 産業的 價値가 있는 균주는 所定の 微生物特性檢査를 거쳐서 특허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발효제품과 裝置에 대한 개발연구도 힘써 나아감으로써 국내 미생물공업의 全般的인 발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微生物關聯特許規定은 確立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支援機構와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 微生物關聯特許業務를 좀더 圓滑化하기 위해서는 특히 種菌保存機構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허심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국내발명특허를 保護育成하여 앞으로 국내개발기술의 世界進出을 위한 터전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